

광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64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피 고 1. B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황선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20. 2. 24. 접수 D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20. 2. 24. 접수 E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20. 2. 24. 접수 F로 마친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17. 2. 6. 접수 G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17. 2. 6. 접수 H로 마친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 중 자동차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I의 법인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 31.경 I, 주식회사 J(이하 편의상 양수인을 I라고만 칭한다)과, I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법인체(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C 주식 전부 및 피고 C의 사업권, 영업권, 특허 등 유·무형 자산 일체) 및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자동차,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대금 40억 원에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1) 을 체결하였다.

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사업승계))

원고가 I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1) 양도양수 기준일은 2017. 1. 31.이다.
- 2)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100%) 및 법인체
- 3)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C 관련 사업권 및 피고 C 자산일체
- 4)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권, 사업허가서 및 면허·특허사항(허가사항) 등 무형자산

이하 중략 -

제2조(양도양수 대금)

양도양수 대금은 총 40억 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 I는 아래 2~4번 내용으로 13억 4,500만 원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2. 7억 500만 원은 법인부채(개인담보 + 법인대출금) 승계

3. 1억 4,000만 원은 이자로 대납, 상환 처리한다.

4. K조합 개인대출금(L: 태양광대출) 5억 원도 부채 승계한다.

상기 1~4번은 계약금 13억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임

6. 개인담보(원고) 소멸 시 상환할 금액 4억 원

7. 원고가 선 상환하고 원고의 개인담보를 삭제 후

8. I가 1개월 이내에 추가대출 후 상환금액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9. 잔금 26억 5,500만 원은 2018. 12. 30.까지 지급한다.

단 잔금 26억 5,500만 원 중 2017. 5. 30.까지 현금 5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제7조(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계약을 원고가 불이행할 때에는 I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I가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 및 C 관련, 개인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원고의 의무 이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던 피고 C의 공장 및 기계·기구 등을 I에게 인도하고,

2017. 2. 2.경 원고의 피고 C 주식(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주식 포함) 합계 25,000주 중

22,500주(1주 액면금 10,000원, 합계 2억 2,500만 원)를 I 및 M 등에게 양도하였다. I는 2017. 2.

2.경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2017.

3. 22.경 원고와 L 명의로 운영하던 N, O 각 태양광발전소를 I에게 양도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1) 피고 C의 명의이전등록

원고는 2017. 2. 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자동차(이하 '제1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강진군 접수 G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자동차(이하 '제3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강진군 접수 H로 각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2) 피고 B의 명의이전등록

피고 C은 2020. 2. 24. 피고 B에게, 제1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접수 D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자동차(이하 '제2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강진군 접수 E로, 제3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접수 F로 각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내지 19, 27, 28호증, 을가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I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잔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모두 마친 후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마쳤는데도 I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이므로, 이는 I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소위 실권약관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I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상회복의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C에게 제1, 3 각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이 위 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제1 내지 3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B은 I의 배우자인데,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명의이전의 경위나 계약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 B이 현재 위 각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위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원인이 되는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권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경우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 C 관련 및 개인 모든 권한을 다시 귀속'받으므로, 피고 C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제1, 3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 말소등록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는 특정물채권으로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제1 내지 3 각 자동차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봄메, 판사 이신애, 판사 김경중

별지

목 록

1. 등 록 번 호 : (차량번호 1 생략)
제 원 관 리 번 호 : A08-1-00050-0223-3203
차 명 : 마이티내장차(터보)
차 종 : 화물 중형
차 대 번 호 : P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D4AL 2004
2. 등 록 번 호 : (차량번호 2 생략)
제 원 관 리 번 호 : BEU-1-00024-0000-3309
차 명 : 한국상용트럭4.5톤카고
차 종 : 화물 대형
차 대 번 호 : Q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DL06 2010
3. 등 록 번 호 : (차량번호 3 생략)
제 원 관 리 번 호 : 1-00244-0001-0003
차 명 : 현대5톤트럭-초장축
차 종 : 화물 대형
차 대 번 호 : R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D6BJ 1993. 끝.

1) 편의상 당사자를 이 사건을 기준으로 기재하기로 한다.